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2023. 10. 24.

행정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2023년 10월 10일

나. 제출자: 영등포구청장

다. 회부일자: 2023년 10월 19일

라. 상정일자: 제248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2023. 10. 23.)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행정국장 유옥준)

가. 제안이유

○ 국가 안보와 국민 안전을 위해 국방에 봉사하는 예비군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기본적인 권리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제2조)

○ 차량운행 비용 지원의 규모·절차·방법 및 정산 등(안 제3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전문위원: 김옥연)

○ 본 제정조례안은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규정하여 국가안보와 국민의 안전을 위해 국방에 봉사하는 예비군의 처우를 개선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총 3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됨.

○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2조(정의)에서 “훈련장”을 제52사단 제213여단 제1대대 예비군훈련장으로 지칭하고 있는데, 해당 훈련장은 안양시 만안구에 위치한 박달과학화 예비군 훈련장으로 주로 강서구, 구로구, 금천구, 양천구, 영등포구, 동작구 소속 예비군 대원들이 해당 훈련장에 배정됨.
- 안 제3조(차량운행 비용의 지원 등)는 예비군 훈련 책임 군부대의 장으로부터 차량운행 비용 지원 신청이 있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임차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검토 결과

- 영등포구 예비군이 훈련을 받게 되는 박달과학화훈련장은 대중교통 기준, 안양역에서 마을버스를 타고 훈련장 인근에서 하차하는데 훈련 당일 마을버스 탑승을 위한 대기인원이 많을 경우 입소시간을 맞추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음.
- 「예비군법」 제14조의3(예비군의 육성 및 지원 책임)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해서도 예비군을 육성·지원해야 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며, “예비군의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과 관련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1항제5호에서는 “예비군 대원에 대한 사기양양, 민·관·군 간의 유대 강화 및 홍보, 그 밖에 예비군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음. 또한, 국방부령인 「예비군 육성·지원에 관한 규칙」 제4조제3호에서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해 관할 지역 안의 예비군을 육성하고 지원해야 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음.
- 본 제정을 통해 우리 구 예비군 대원들에게 훈련 입소와 관련한 교통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이들이 훈련에 보다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의의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예비군법 시행령」 제27조에 근거하여 이미 국방부에서 급식비 8,000원, 교통비 8,000원을 실비로 지급하고 있어 이로 인한 중복 지원 및 개인 차량을 이용하는 입소자에 대한 형평성에 관하여 논의가 필요할 것임.
- 참고로, 서울시 포함 다른 자치구에서 고물가 상황에 생업까지 중단하면서 국방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는 예비군 대원들의 입장을 고려하여 유사한 조례를 제정하거나 입법을 진행하고 있는 추세임.

4. 심사결과: 원안 가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제 231 호
----------	---------

제출연월일: 2023. 10. .
제 출 자 : 영등포구청장

1. 제안이유

국가 안보와 국민 안전을 위해 국방에 봉사하는 한 부분인 예비군에 대한 처우개선과 기본적인 권리에 대한 보장을 강화하고,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을 통한 영등포구 예비군에 대한 사기진작 및 지원정책을 마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제2조)
- 나. 차량운행 비용 지원의 규모·절차·방법 및 정산 등(안 제3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규: 「예비군법」
- 나. 예산조치: 2024년 예산 반영 예정(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 다. 협의사항

- 1) 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
- 2) 인권영향평가: 인권 침해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됨
- 3) 성별영향분석평가: 개선할 사항 없음
- 4) 행정규제심사: 신설·강화되는 규제사무 없음

라. 입법예고(2023. 8. 31. ~ 9. 20. / 20일간) 결과: 의견 없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예비군대원들의 예비군 훈련장 입소 편의를 위하여 예비군 훈련 책임 부대장이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예비군대원의 사기 진작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훈련장”이란 제52사단 제213여단 제1대대 예비군훈련장을 말한다.
2. “예비군”이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이하 “구”라 한다)에 거주하는 예비군으로서 훈련장으로 훈련소집통지서를 받은 사람을 말한다.
3. “차량”이란 예비군 수송을 위하여 구 관할구역 안에서 훈련장까지 운행하는 임차차량을 말한다.

제3조(차량운행 비용의 지원 등) 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은 예비군 훈련 책임 군부대의 장으로부터 차량운행 비용 지원신청이 있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임차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비용지원에 따른 절차·방법 및 정산 등은 「예비군 육성·지원에 관한 규칙」 및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내역

-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 용역 계약비: 75,200천원

2. 미첨부 근거 규정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2조제2항의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 소요예산: 75,200천원(1억원 미만)
- 차년도 가용예산 범위 내에서 차량운행 지원 추진
 - 차량운행 대수 조정(예비군 훈련일정 및 참석률 등 고려)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행정국 총무과 연제승
연 락 처	02-2670-3317